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 - 41호

보 상 협 의 공 고(공시송달)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하나개입구~광명항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 하나개입구~광명항간 도로개설공사

2.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392-1번지 ~ 무의동 39-3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4.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대리인 한국부동산원장

5. 공 고 사 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거소 및 협의통지장소 불명

6. 협의기간·장소 및 협의방법

가. 기간 : 2022. 3. 3.(목) ~ 2022. 3. 18.(금)

나. 장소

-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북부보상사업단 인천사업소(☎ 032-569-7566)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405호(청라동, 백양빌딩)

다. 협의방법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정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7.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인천광역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 체결이 가능함

8.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필수 구비서류 및 지참물품	
통장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인감도장	
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경우	**② 지장물 소유자인 경우**
1. 인감증명서 2통 (일반용 2)	1. 인감증명서 1통 (일반용 1)
2. 주민등록초본 2통 (과거주소변경사항 포함)	2. 주민등록초본 1통
3. 편입 부동산(토지,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영업(거주) 및 지장물소유 사실(이사)확인서·각서 1부 -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4. 편입토지(임야)대장 1부	
※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지장물 소유자인 경우 '①'에 해당하는 서류 및 '영업(거주) 및 지장물소유 사실(이사)확인서·각서' 제출	

9. 보상협의 공고내역(토지등의 보상액 내역) : '별지'참조